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6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박 정
이수진 · 임호선 · 전용기
김태선 · 진성준 · 노종면
홍기원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
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
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지
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사업
2.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4. 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

6.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u> <u>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사업
 2.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4. 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
 6.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u>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	---